

제주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가합108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성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효섭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2021. 1.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21. 1. 11. 접수 제22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2.경 제주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3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21. 1. 26.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위 법원 2020차전7496).

나. C은 2021. 4. 5. 위 지급명령에 대해 추완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로인해 진행된 재판에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위 법원 2021가합11752,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22. 5. 10.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다. C과 피고는 2021. 1.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채권최고액을 1,0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에 대해 3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그런데 C은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해 2021. 1. 11.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원고는 무자력 상태에 빠졌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는바, 원고는 C에 대해 어떠한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

3. 판단

원고가 C을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가 C의 추완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제출한 위 지급명령 정본(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종철, 판사 최석준, 판사 강미혜

[별지]**부동산의 표시**

1. 제주시 D 전 3271㎡
2. 제주시 E 전 2830㎡
3. 제주시 F 전 987㎡, 끝.

